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낮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한화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18년 9월 6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9월 12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조원]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8. 9. 6)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 코드: 55138]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낮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및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며, 특히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02-6950-0000)		
모집(판매)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8.09.12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	A-e	C	C-e
가입자격	제한없음	인터넷뱅킹	제한없음	인터넷뱅킹
판매수수료	[선취] 납입금액의 0.2%	[선취] 납입금액의 0.1% 이하	-	-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연 %)	판매	0.01	0.005	0.15
	운용등	[집합투자업자] 0.07 [신탁업자] 0.015 [일반사무관리회사] 0.012		
	기타	0.0081	0.0074	0.0081
	총보수 비용	0.1151	0.1094	0.2551
※ 주석사항	<p>[상기 외 종류] A-u, A-u2,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C-w, I, CG [보수 지급시기] 판매/운용 등 : 매 3개월 후급, 기타 : 사유발생시 주1)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 부담할 수 있음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참조</p>			
매입 방법	[17시 이전(경과후)] 2(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17시 이전(경과후)] 3(4)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3(4)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직전일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유지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및 회사채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며, 특히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보유채권의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축소
- 필요시 파생상품에 투자

*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AP Money Market Index 10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CP 등의 자산에 투자하므로, 투자한 국내 채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서경화(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5.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7.07.18 ~ 18.07.17	16.07.18 ~ 17.07.17	15.07.18 ~ 16.07.17	14.07.18 ~ 15.07.17	13.07.18 ~ 14.07.17
종류 A	1.54	1.30	1.67	2.54	3.05
비교지수	1.61	1.41	1.70	2.47	3.27

주1) 비교지수 : KAP Money Market Index 100%

주2) 종류 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 상기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분류: 6등급(매우 낮은 위험)

주)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 내부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판매회사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 펀드 드레이션 조절을 통해 시장위험을 관리하며, 채권 및 유동성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신용위험을 통제합니다. 채권 섹터별, 신용등급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회사채의 경우 운용팀과 독립된 크레딧리서치팀에서 미리 정한 투자 종목(Buy List)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

▪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가. 종류 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수익증권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 수익증권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범위 내에서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나. 종류 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레전드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 (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프라임상업용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범위 내에서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 전환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다.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의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55138)

종류 (클래스)	A	A-e	A-u2	C	C-e	C-P (연금저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2354	BG944	A9002	55139	BG945	B1319
종류 (클래스)	C-Pe (연금저축)	C-RP (퇴직연금)	C-RPe (퇴직연금)	C-w	I	CG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U738	B1320	BU739	55935	56080	BP579
종류 (클래스)	A-u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582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종류A-u2에 한함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1좌 = 1원, 원본액 기준)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55138)

종류 (클래스)	A	A-e	A-u2	C	C-e	C-P (연금저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92354	BG944	A9002	55139	BG945	B1319
종류 (클래스)	C-Pe (연금저축)	C-RP (퇴직연금)	C-RPe (퇴직연금)	C-w	I	CG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U738	B1320	BU739	55935	56080	BP579
종류 (클래스)	A-u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582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3.06	최초 설정
2007.6.01	푸르덴셜정통액티브채권투자신탁1호로 투자신탁명 변경
2009.4.26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푸르덴셜정통액티브채권투자신탁1호 ⇒ 푸르덴셜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011. 2. 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 (주)S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티스(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변경: 0.02% => 0.012%
2011. 9. 19	집합투자업자 합병으로 인한 투자신탁 명칭 변경 푸르덴셜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2012. 3. 5	종류 수익증권(종류 A-u2) 추가
2014. 7. 1	●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 투자전략/투자대상취득한도/집합투자기구 보수/비교지수/투자위험등급 변경 ● 종류 수익증권 명칭변경(종류 B => 종류 C)
2014. 12. 2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오현세 → 전용일)
2015. 3. 25	1. 종류 C-P 및 C-RP 수익증권 신설 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전용일 => 박하나)
2015. 9. 24	1. 종류 수익증권 명칭 변경: C-P => C-P(연금저축), C-RP => C-RP(퇴직연금) 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하나 → 박하나, 김현주)
2016. 3. 14	종류 수익증권 명칭 변경 (F→ C-w)
2016. 07. 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 5등급(매우 낮은 위험) => 6등급(매우 낮은 위험)
2016. 8. 29	종류 A-e, C-e 수익증권 신설
2017. 2. 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하나, 김현주 → 박하나, 이상준)
2017. 4. 29	1. 종류 CG 수익증권 신설 2. 종류 C-w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2017. 7. 28	종류 수익증권 추가[C-Pe(연금저축), C-RPe(퇴직연금)]
2017. 12. 27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하나, 이상준 → 서경화)
2018. 3. 26	종류 수익증권(종류 A-u) 추가
2018. 4. 10	전환가능 대상펀드(한화프리엄브렐러BEAR인덱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

	(주가지수선물-파생형)) 삭제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8. 7. 17)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 구 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서경화	1975	파트장	4개	38,594억	-부산대 사회학 학사 -한화자산운용(2000.1 ~ 현재)

주 1) 상기인은 MMF 파트의 파트장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5.03.25	전용일	박하나
2015.09.24	박하나	박하나, 김현주
2017.02.03	박하나, 김현주	박하나, 이상준
2017.12.27	박하나, 이상준	서경화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5.03.25	박하나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

나. 종류형 구조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A	제한 없음
A-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
A-u	제한 없음. 전환권
A-u2	제한 없음. 종류A-u2 수익증권간 전환권
C	제한 없음
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
C-P(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의 가입자
C-Pe(연금저축)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의 가입자
C-R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규정한 적립금
C-RPe(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규정한 적립금
C-w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하는 경우
I	집합(간접)투자기구, 변액보험,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CG	투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주) 종류 A-u,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의 ‘다.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다. 전환’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형 구조

- 종류 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수익증권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 수익증권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범위 내에서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①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 주가지수선물, 주식,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 장내외 파생상품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시장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레버리지투자위험, 추적오차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0.11. 5
---------	------------

②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채권에 70% 이상 투자. 단,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2) 종류 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레전드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프라임상업용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상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범위 내에서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①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 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인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주식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경제사이클 변혁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유망하고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0

②한화코리아레전드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 (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인 한화코리아레전드배당주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이 주식에 70%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배당소득 및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1. 9. 14

③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 주가지수선물, 주식,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차입, 장내외 파생상품
주요 투자전략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 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시장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레버리지투자위험, 추적오차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0.11. 5

④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채권에 70% 이상 투자. 단,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⑤한화글로벌프라임상업용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글로벌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 투자
주요 투자전략	투자신탁은 글로벌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지역별, 섹터별 자산배분을 통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차익을 포함하는 토탈리턴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부동산증권 등 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 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 4. 10

⑥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인 한화차이나H 스피드업1.5배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발행한 주식(H-share) 및 이와 관련된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
주요 투자전략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으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여 HSCEI 지수에의 노출도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하여 HSCEI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1.5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11. 2. 7

⑦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채권 60%이상
주요 투자전략	<p>-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p> <p>-장기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분산투자를 통해 신용위험을 축소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조절하여 안정적 이자수익을 확보합니다.</p> <p>-저평가 회사채에 대한 투자: 선진화된 신용투자 프로세스와 분석기법을 활용한 높은 안정성과 상대가치를 추구합니다.</p> <p>-섹터별 투자비중의 조절을 통한 신축적인 장세 대응을 추구합니다.</p> <p>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주요 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 10

⑧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주요 투자전략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며, S&P Korea Dividend Opportunity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S&P Korea Dividend Opportunity 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주적오차 발생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 10

⑨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채권에의 투자는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및 회사채 등에 투자하며,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어음,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등을 활용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원금손실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 1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유지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채권	70%이상. 단, 국공채에 투자는 70% 이상	- 채권은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국공채”라 한다) 및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함
②자산유동화증권	30%이하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③어음	30%이하	-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함
④금리스왑거래	-	- 금리스왑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⑤집합투자증권등	20%이하	- 집합투자증권등이란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을 말함
⑥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 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⑦증권의 대여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⑧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	-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함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시행령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투자대상(①~⑧)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제 1 항 제 1호 및 제 3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 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3 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한다.

*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헛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헛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p>
② 동일종목 증권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③ 집합투자증권	<p>투자신탁 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p>

	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장외파생상품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장외파생상품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⑧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④,⑤,⑥,⑦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③의 가,④,⑤,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및 회사채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며, 특히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보유채권의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축소
- 필요시 파생상품에 투자

*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KAP Money Market Index 100%

KAP Money Market Index

KAP Money Market Index 는 한국자산평가에서 발표하는 지수 중 하나로서, 국고채 3 종목, 통안채 21 종목, 특수은행채 6 종목 등 단기채권 30 종목에 투자하는 채권지수입니다.

- 지수산정 방법 등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11년 12월 31일, 100pt
- 산출방식: 국내 채권시장의 실시간 움직임을 1 분단위로 지표화하여 산출
- 정기변경: 매월 첫 영업일(단, 종목 교체일이 비영업일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종목교체 실행)

- (3)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펀드 드레이션 조절을 통해 시장위험을 관리하며, 채권 및 유동성에 대해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신용위험을 통제합니다. 채권 섹터별, 신용등급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회사채의 경우 운용팀과 독립된 크레딧리서치팀에서 미리 정한 투자 종목(Buy List)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드레이션: 원래 채권에 투자된 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채권 드레이션은 금리변동에 대한 채권가격의 민감도 지표로 사용되며, 드레이션이 길면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CP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국내 채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

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자율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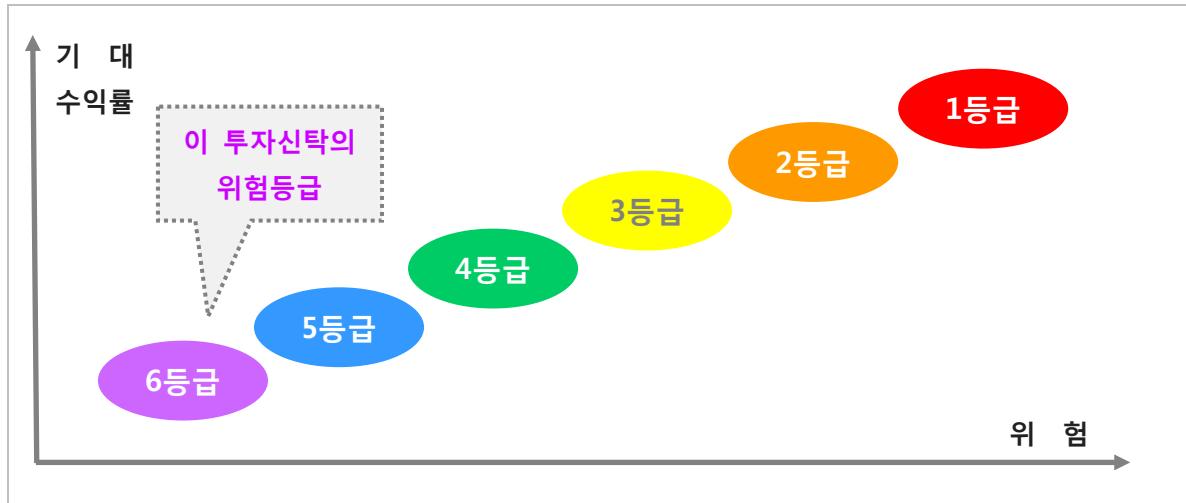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연환산 표준편차: 0.15%)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연환산 표준편차: 0.15%)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¹⁾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²⁾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자산³⁾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해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 7) 펀드별 위험등급은 투자지역, 투자전략, 투자구조,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환위험 노출도, 신용위험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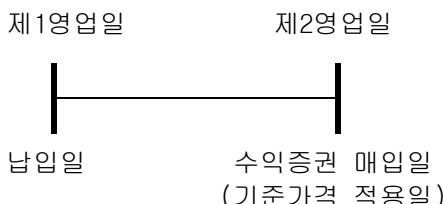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A	가입자격 제한은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A-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A-u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수익증권
종류 A-u2	가입자격 제한은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엠브렐러 전환권(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이 부여되는 수익증권
종류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 (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Pe (연금저축)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RP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매수청약 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RPe (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매수청약 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w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하는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I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보험

	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종류 A-u, 종류 A-u2 수익증권의 전환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의 ‘다. 전환형 구조’ 및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다.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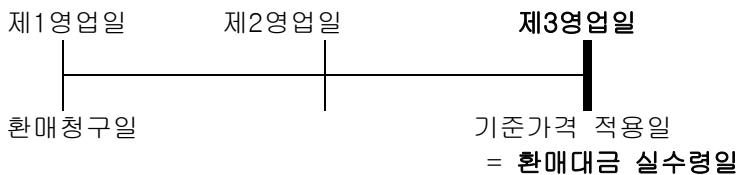
나. 환매

(1) 환매방법, 절차, 가능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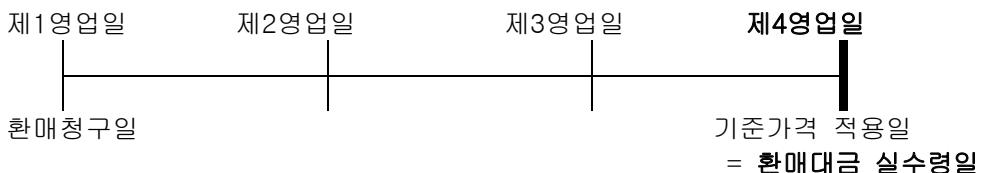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3)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종류A-u, 종류A-u2 수익증권의 전환에 의한 환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다.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

※ 유의사항

- ▶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종류A-u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종류A-u 수익증권**은 다른 투자신탁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가)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 수익증권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 수익증권

(나) 전환시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수익증권매입일)

- ①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

구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	----------------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①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전환청 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②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

구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①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다)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경과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②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A-u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 전환 청구한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

(라)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익자는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전환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이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 매입일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가)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레전드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프라임상업용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나) 전환시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수익증권 매입일)

- ① 한화코리아레전드4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코리아레전드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2호(주식)의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②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구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①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경과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③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2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⑤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④ 한화글로벌프라임상업용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⑤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8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⑥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⑤ 한화차이나스피드업 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⑥ 전환처리 기준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 시(오후 3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6 영업일
15 시(오후 3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한국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나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

⑦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 시(오후 3 시)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 시(오후 3 시)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 한화개인MMF1호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⑦ 전환처리 기준

⑥-1 한화코리아레전드 4 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코리아레전드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 2 호(주식)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⑥-2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①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13 시 30 분(오후 1 시 30 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②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①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전환청구시> →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⑥-3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 2 호(채권)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⑥-4 한화글로벌프라임상업용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7 시(오후 5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17 시(오후 5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⑥-5 한화차이나 H스피드업 1.5 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구 분	전환 환매시 기준가 적용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15 시(오후 3 시) 이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15 시(오후 3 시) 경과후 청구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 기준(토요일은 제외)

⑤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 청구의 취소는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환청구에 따른 취소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⑥-1 한화코리아레전드 4 차산업혁명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한화코리아레전드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화배당성장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 2 호(주식)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2 한화 2.2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13시 30분(오후 1시 30분) 이전까지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3시 30분(오후 1시 30분)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3시 30분(오후 1시 30분)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3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 2호(채권)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4 한화글로벌프라임상업용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전환 청구한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⑥-5 한화차이나 H 스피드업 1.5 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종류 A-u2 수익증권으로 전환 청구시

- 15시(오후 3시) 이전에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 15시(오후 3시) 경과후 전환 청구한 경우 :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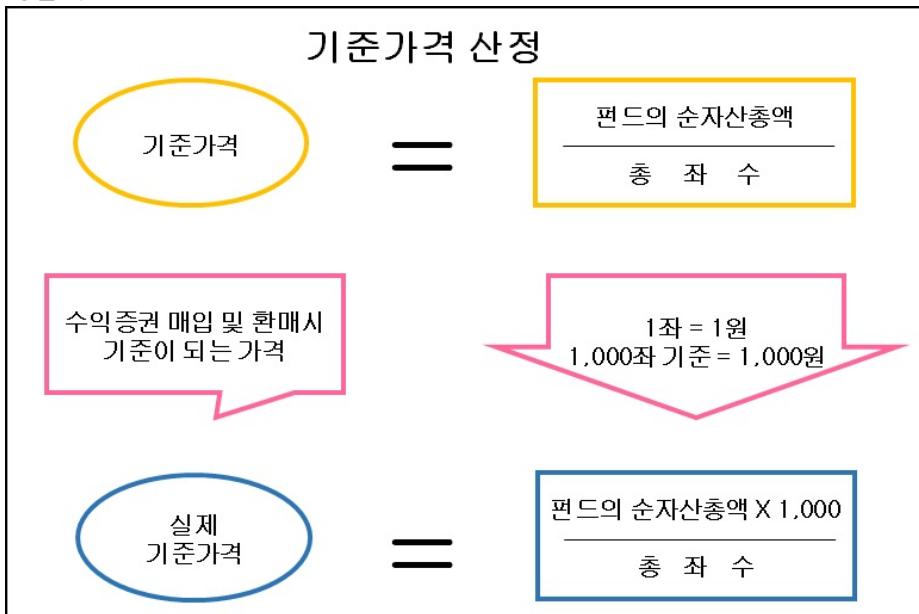
* 기타 전환관련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 (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 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종가괴리율 ^{주1)} 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종가괴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0.2%	-	-	-
A-e	0.1% 이하 ¹⁾	-	-	-
A-u	1.0% 이하 ¹⁾	-	-	-
A-u2	1.0% 이하 ¹⁾	-	-	-
C	-	-	-	-
C-e	-	-	-	-
C-P(연금저축)	-	-	-	-
C-Pe(연금저축)	-	-	-	-
C-RP(퇴직연금)	-	-	-	-
C-RPe(퇴직연금)	-	-	-	-
C-w	-	-	-	-
I	-	-	-	-
CG	-	-	-	-
부과기준	납입금액	3년미만 환매시	-	-

주1) 종류 A-e, A-u 및 종류 A-u2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 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 수	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 용	증권 거래비용
A	0.07	0.01	0.015	0.012	0.0081	0.1151	0.0011
A-e	0.07	0.005	0.015	0.012	0.0074	0.1094	0.0011
A-u	0.07	0.098	0.015	0.012	0.0067	0.2017	0.0020
A-u2	0.07	0.09	0.015	0.012	0.0056	0.1926	0.0011
C	0.07	0.15	0.015	0.012	0.0081	0.2551	0.0011
C-e	0.07	0.075	0.015	0.012	0.0080	0.1800	0.0011
C-P	0.07	0.11	0.015	0.012	0.0080	0.2150	0.0011

(연금 저축)							
C-Pe (연금 저축)	0.07	0.055	0.015	0.012	0.0048	0.1568	0.0002
C-RP (퇴직 연금)	0.07	0.10	0.015	0.012	0.0080	0.2050	0.0011
C-RPe (퇴직 연금)	0.07	0.05	0.015	0.012	0.0052	0.1522	0.0001
C-w	0.07	0.00	0.015	0.012	0.0081	0.1051	0.0015
I	0.07	0.03	0.015	0.012	0.0082	0.1352	0.0010
CG	0.07	0.08	0.015	0.012	0.0069	0.1839	0.0012
지급시 기	매3개월 후금	매3개월 후 급	매3개월 후 급	매3개월 후금	사유발생시 (주1 참조)	-	사유발생시 (주2 참조)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2017.03.06 ~ 2018.03.05)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7.03.06 ~ 2018.03.05)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A	32	57	85	168
A-e	21	45	72	151
A-u	121	165	214	360
A-u2	120	162	209	348
C	26	82	144	329
C-e	18	58	102	232
C-w	22	69	122	277
C-P(연금저축)	16	51	89	202
C-RP(퇴직연금)	21	66	116	264
C-Pe(연금저축)	16	49	86	196
C-RPe(퇴직연금)	11	34	60	135
I	14	44	77	174
CG	19	59	104	237

주)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종류 A: 0.2%, 종류 A-e: 0.1%, 종류 A-u: 1.0%, 종류 A-u2: 1.0%로 가정) 및 총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7월 2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 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 • □□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2기(2017.03.06 – 2018.03.05)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11기(2016.03.06 – 2017.03.05)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10기(2015.03.06 – 2016.03.05)	안진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통합 대차대조표		
	제 12 기 (2018.03.05)	제 11 기 (2017.03.05)	제 10 기 (2016.03.05)
운용자산	334,587,857,591	1,506,700,276,539	1,388,827,619,949
증권	332,044,622,865	1,506,415,485,630	1,367,319,192,03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543,234,726	284,790,909	21,508,427,91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408,967,652	7,876,897,946	9,954,703,053
자산총계	336,996,825,243	1,514,577,174,485	1,398,782,323,00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76,852,682	647,698,980	570,029,797
부채총계	176,852,682	647,698,980	570,029,797
원본	330,221,991,360	1,494,049,740,605	1,374,382,962,997
수익조정금	-6,262,169,140	-2,899,699,211	3,816,342,382
이익잉여금	12,860,150,341	22,779,434,111	20,012,987,826
자본총계	336,819,972,561	1,513,929,475,505	1,398,212,293,205

항 목	통합 손익계산서		
	제 12 기 (2017.03.06 – 2018.03.05)	제 11 기 (2016.03.06 – 2017.03.05)	제 10 기 (2015.03.06 – 2016.03.05)
운용수익	12,540,804,364	26,331,244,971	22,849,395,022
이자수익	14,081,954,778	35,175,392,481	28,575,887,323
배당수익	0	0	270,920,000
매매/평가차익(손)	-1,541,150,414	-8,844,147,510	-5,997,412,30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489,718,320	3,184,691,415	2,588,327,714
관련회사 보수	1,489,718,320	3,184,691,415	2,588,327,714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79,840,553	367,119,445	248,079,482
당기순이익	10,871,245,491	22,779,434,111	20,012,987,82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원, 억좌)

가. 종류A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1,255	1,263	222	224	997	1,009	480	490
2016.03.06 - 2017.03.05	882	882	2,111	2,124	1,737	1,752	1,255	1,273
2015.03.06 - 2016.03.05	997	997	1,176	1,186	1,291	1,303	882	898

나. 종류C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6,742	6,790	2,370	2,395	6,546	6,624	2,566	2,617
2016.03.06 - 2017.03.05	9,483	9,483	13,773	13,841	16,514	16,614	6,742	6,827
2015.03.06 - 2016.03.05	6,566	6,566	22,731	22,898	19,815	19,978	9,483	9,644

다. 종류A-u2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1	1	1	1	1	1	1	1
2016.03.06 - 2017.03.05	1	1	0	0	0	0	1	1
2015.03.06 - 2016.03.05	3	3	0	0	2	2	1	1

라. 종류 C-w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553	557	2,160	2,189	2,553	2,592	159	163
2016.03.06 - 2017.03.05	29	29	1,100	1,107	577	582	553	561
2015.03.06 - 2016.03.05	0	0	51	51	22	22	29	30

마. 종류I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6,327	6,352	83	84	6,391	6,447	20	20
2016.03.06 - 2017.03.05	3,338	3,338	4,626	4,643	1,637	1,651	6,327	6,415
2015.03.06 - 2016.03.05	388	388	11,326	10,967	8,376	7,980	3,338	3,399

바. 종류C-P(연금저축)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7.03.06 - 2018.03.05	26	27	31	32	27	28	31	31
2016.03.06 - 2017.03.05	7	7	43	43	23	24	26	27
2015.03.06 - 2016.03.05	0	0	9	9	2	2	7	7

사. 종류C-RP(퇴직연금)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2016.03.06 - 2017.03.05								
2015.03.06 - 2016.03.05								

아. 종류A-e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1	1	10	10	7	7	4	4
2016.03.06 - 2017.03.05	0	0	2	2	1	1	1	1

자. 종류C-e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15	15	54	55	48	49	22	22
2016.03.06 - 2017.03.05	0	0	34	34	19	19	15	15

차. 종류CG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0	0	5	5	4	4	1	1

카. 종류C-Pe(연금저축)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0	0	0	0	0	0	0	0

타. 종류C-RPe(연금저축) 수익증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7.03.06 - 2018.03.05	0	0	0	0	0	0	0	0

2017.03.06 – 2018.03.05	0	0	0	0	0	0	0	0
-------------------------	---	---	---	---	---	---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7.07.18 ~ 18.07.17	16.07.18 ~ 18.07.17	15.07.18 ~ 18.07.17	13.07.18 ~ 18.07.17	06.03.06 ~ 18.07.1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1.65	1.53	1.61	2.21	4.13
비교지수	1.61	1.51	1.57	2.09	3.84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A	1.54	1.42	1.50	2.01	2.87
비교지수	1.61	1.51	1.57	2.09	3.10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	1.40	1.28	1.36	1.86	3.53
비교지수	1.61	1.51	1.57	2.09	3.84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W	1.55	1.43	1.51	-6.17	0.40
비교지수	1.61	1.51	1.57	2.09	3.83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I	1.52	1.40	1.48	1.28	0.52
비교지수	1.61	1.51	1.57	2.09	3.83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A-u2	1.46	1.34	1.42	1.95	2.25
비교지수	1.61	1.51	1.57	2.09	2.4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P(연금저축)	1.44	1.32			1.40
비교지수	1.61	1.51			1.5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RP(퇴직연금)	1.45	1.33			1.42
비교지수	1.61	1.51			1.58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A-e	1.55				1.45
비교지수	1.61				1.54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e	1.47				1.38
비교지수	1.61				1.54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G	1.47				1.44
비교지수	1.61				1.60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Pe(연금저축)					1.64
비교지수					1.82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C-RPe(퇴직연금)					1.58
비교지수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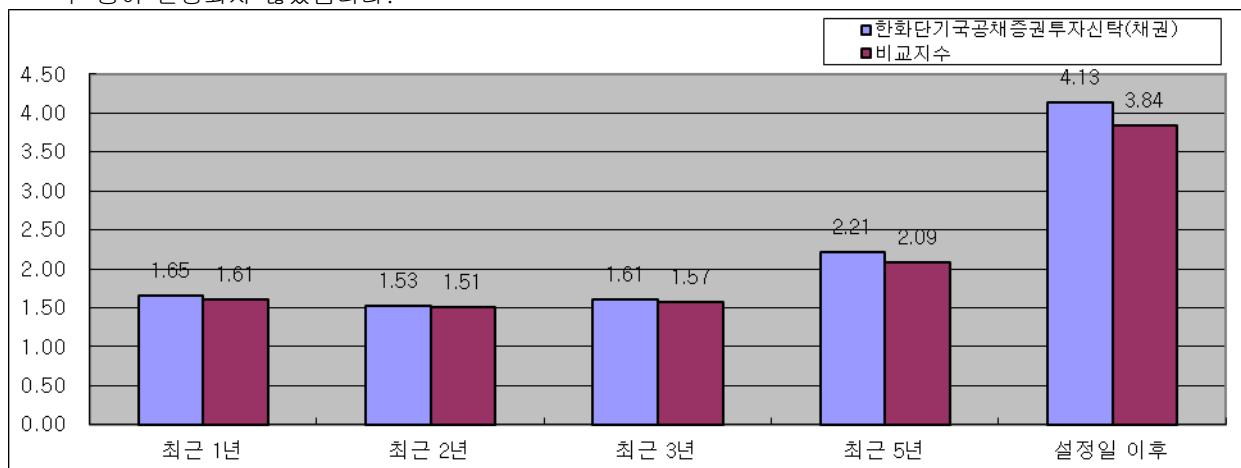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A-u					1.81
비교지수					1.85

주1) 비교지수 : KAP Money Market Inde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은 그라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7.07.18 ~ 18.07.17	16.07.18 ~ 17.07.17	15.07.18 ~ 16.07.17	14.07.18 ~ 15.07.17	13.07.18 ~ 14.07.1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1.65	1.41	1.78	2.65	3.58
비교지수	1.61	1.41	1.70	2.47	3.2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A	1.54	1.30	1.67	2.54	3.05
비교지수	1.61	1.41	1.70	2.47	3.2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	1.40	1.15	1.52	2.39	2.84
비교지수	1.61	1.41	1.70	2.47	3.2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w	1.55	1.31	1.68	-32.70	3.33
비교지수	1.61	1.41	1.70	2.47	3.2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I	1.52	1.28	1.65	1.95	0.00
비교지수	1.61	1.41	1.70	2.47	3.2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A-u2	1.46	1.22	1.59	2.46	3.03
비교지수	1.61	1.41	1.70	2.47	3.27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P(연금저축)	1.44	1.20	1.62		
비교지수	1.61	1.41	1.74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	1.45	1.20	1.75		

탁(채권) 종류 C-RP(퇴직연금)				
비교지수	1.61	1.41	1.83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A-e	1.55	1.34		
비교지수	1.61	1.46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e	1.47	1.26		
비교지수	1.61	1.46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종류 CG	1.47			
비교지수	1.61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 C-RPe(퇴직연금)	1.58			
비교지수	1.66			

주1) 비교지수 : KAP Money Market Index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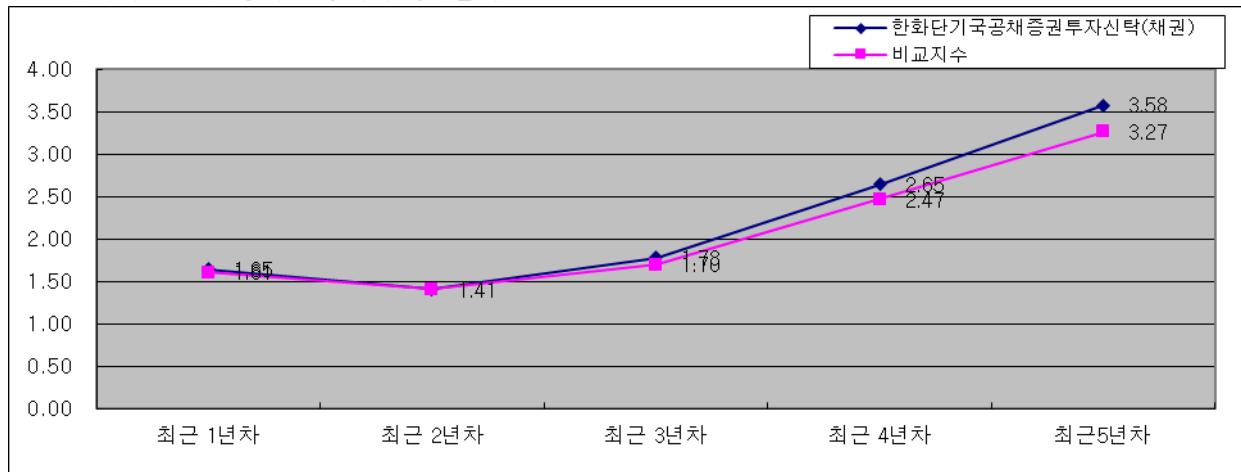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 2018. 6. 5)

1. 전체자산구성현황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정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3,042	798	307	0	0	0	0	0	11	1	4,159
	(0.00)	(73.14)	(19.18)	(7.37)	(0.01)	(0.00)	(0.00)	(0.00)	(0.00)	(0.28)	(0.02)	(100.00)
합계	0	3,042	798	307	0	0	0	0	0	11	1	4,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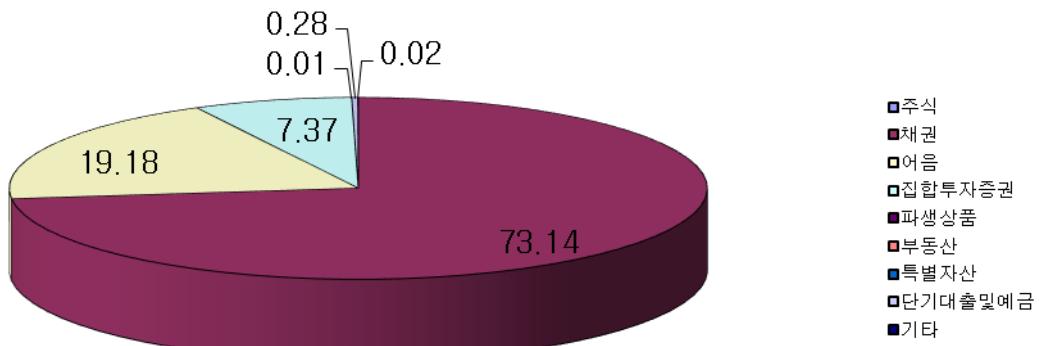
	(0.00)	73.14	19.18	(7.37)	(0.01)	(0.00)	(0.00)	(0.00)	(0.28)	(0.02)	(100.00)
--	--------	-------	-------	--------	--------	--------	--------	--------	--------	--------	----------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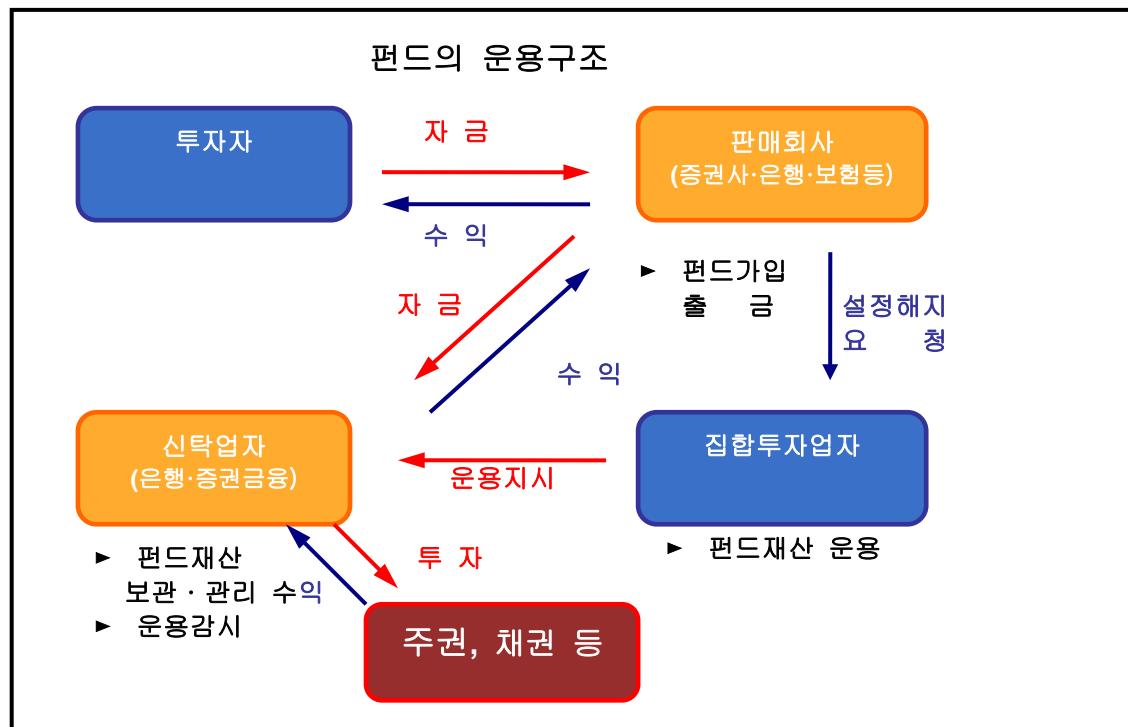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 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600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항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30기		제29기		당기순이익
	(' 17.12.31)	(' 16.12.31)	제30기	제29기	
현금및현금성자산	60,819	25,403	영업수익	101,240	76,57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1,565	33,160	영업비용	50,284	41,925
매도가능금융자산	10,889	40,674	영업이익	50,956	34,645
종속기업투자	36,828	25,459	영업외수익	894	1,900
대여금및수취채권	73,977	43,428	영업외비용	1,903	979
유형자산	2,991	2,027	법인세차감전	49,947	35,567
투자부동산	-	-	법인세비용	11,789	8,322
무형자산	4,864	5,382	당기순이익	38,158	27,245
이연법인세자산	2,056	1,460			
기타자산	842	584			
자산총계	214,831	177,577			
예수부채	423	200			
미지급금 및 기타금융부채	10,729	7,392			
충당부채	766	578			
순확정급여부채	-1,186	-231			
당기법인세부채	8,606	5,749			
기타부채	573	427			
부채총계	19,991	14,115			
자본금	60,000	60,000			
자본잉여금	8,324	8,3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44	-1,204			
이익잉여금	127,540	96,341			
자본총계	194,920	163,462			
부채및자본총계	214,831	177,577			

라. 운용자산 규모

(2018. 7. 17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 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 계
	주식 형	채권 형	혼합 형	계약 형	재간접 형	파생형	기 타					
수탁고	34,992	27,329	4,332	0	9,304	14,762	0	20,830	45,337	303	59,219	216,40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봉래동1가), (02)2004-0123
홈페이지 주소	www.hsbc.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02) 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Pricing Inc.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 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종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자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등 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신정1동 313-1) T.(02)2192-1114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의 확인사항
 - 5)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 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 변경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날부터 1 월 이내에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간: 2017. 7. 18~2018. 7. 17)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채권	266,189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증권 거래		평가항목	운용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 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 가중치	50%	15%	10%	25%	100%
나. 장내 파생 상품 거래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효율적 운용
- 나. 투자금액: 100억원(2018.09.12 ~)
- 다.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계획
: 사전에 정해진 투자기간은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 시 환매를 하고,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환매시기를 2회 이상 분할하여 환매할 예정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불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일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